

올해부터 바뀌는 것

세금·공공요금

●근로소득 면세점인상

근로소득자가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면세점이 현행 4인가족 기준 연 4백 4만원(월 43만원)에서 5백 13만원으로 인상된다. 5인가족 기준으로는 연 4백 60만원(월 38만원)에서 5백 81만원(월 49만원)으로 오른다.

또 일용근로자의 면세점은 현행 일당 2만 5천원으로 인상된다.

●근로소득 공제한도액 인상

현행 2백 30만원에서 4백 90만원으로 인상되며 현재 1백 40만원미만은 전액, 1백 40만~4백만원까지는 25%, 4백만원 초과는 15%를 공제받고 있는 것이 2백 30만원이하는 전액, 2백 30만원 초과는 30%를 공제받는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현재 월급여 1백만원을 기준으로 80여만원 한도내에서 30~40%공제하고 있는 것을 연간 총급여 3천 6백만원 이하의 소득자에 한해 50만원 한도내에서 20%를 공제한다.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의 5%를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 24만원이내에서 의료비가 공제되어 왔으나 내년부터는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되고 의료비 공제한도는 연 1백만원으로 인상된다.

●실명금융자산 세율인상

현행 17%(교육세 포함)에서 20%로 상향조정되며 비실명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53%에서 60%로 인상된다.

●특별공제제도 신설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특별공제 제도가 신설돼 월평균 1백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해 연 1백만원 한도 연 54만원 한도안에서 세액공제하고 경로우대공제액은 현행 연 36만원에서 48만원으로 오른다. 퇴직소득 공제액은 현행 5년 이하 30만원, 20년 초과 2백 15만원(연 25만원 추가)에서 5년 이하는 50만원, 20년 초과는 4백 25만원(연 50만원 추가)로 상향조정된다.

●세금우대 가계저축한도 인상

현행 5백만원에서 8백만원내로 높아지며 근로자가 매월 월급여의 30%한도내에서 불입하는 3년이상 장기저축 및 장기증권저축에 대해서는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

●상속세 인상

기초공제액이 현행 1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인상되고 배우자 공제(현행 4천만원)는 1억원에 다 결혼년수에 6백만원씩을 곱한 금액을 더한 합계액으로 대폭 인상된다.

상속세의 시효는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고액상속자 사후관리제도가 신설돼 50억원 이상의 고액상속자에 대해서는 5년후

에 재산점검을 한다.

●양도소득세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와 대규모 개발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 이외에 지금까지는 전액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었으나 내년부터는 91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되는 토지는 전액면제, 사업인정고시 5년전에 취득한 토지의 수용시는 70%, 기타 수용시는 50%를 감면해 준다.

●주택재산 세율인하

최저 과세표준단계가 1천만원으로 조정돼 서민주택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호적 주민등록 인감

●주민등록제도 개선

주민등록 전산화에 읍면동사무소 단위 주민등록 관련 업무가 전산 처리된다.

전산처리 업무는 주민등록 등·초본·주민등록열람, 국외이주 신고필증, 생활보호대상자 증명 등이다.

동일한 읍면동 관내에서 전출입할 때는 전입신고만 하면 되고, 주민등록 열람과 등·초본 교부는 본인 또는 세대원이나 본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자로 제한된다.

●인감 재신고

주민등록업무 전산화에 따라 인감대장이 새로 작성되게 돼 이미 인감을 신고한 사람은 3월 2일부터 인감을 재신고해야 한다.

● 국민연금제도 확대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돼온 국민연금제가 7월부터 5~9인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 의료보호 본인부담률 인하

2종 보호대상자들이 대도시에 입원한 경우 40%이던 부담률이 30%로, 의료보험대상자가 입원할 때는 50%이던 것이 40%로, 외래는 67%에서 57%로 각각 10% 인하된다.

● 서울시립병원 이용개선

카드소지자의 보증인 제도가 없어지고 입원보증금도 6만원으로 단일화된다. 3종카드 소지자는 보증인이 2명에서 1명으로 줄게 되며 보증금은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하된다.

● 농어촌 전화사업 확대지원

5호이상의 벽지 및 50호 이상의 도서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거나 기존자가 발전시설을 개체할 경우 소요 공사비의 대부분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이 부담, 주민은 호당 2만5천원만 내면된다. 자가발전시설을 대체할 경우 도서주민은 전기요금만 부담하고 나머지 운영비는 시도 및 한국전력이 보조한다.

주택·토지

● 토지기록 전국 온라인화
토지·임야대상·등본발급 및 열람이 전국 시·군·구에서 가능해진다.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의무화

소유권이전 계약체결시 반대급부이행 완료일 또는 계약효력 발생일로 부터 60일이내에 이전등기 신청을 해야한다.

이전등기 신청을 기간내에 하지 않을 경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부과된다.

● 국민주택규모건설 의무비율 조정

주택건설업체들이 아파트를 건설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아파트 비율이 총건설호수의 60%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 상속토지 공시지가 적용

토지에 대한 증여세, 양도소득세에 이어 상속세에도 공시지가가 적용돼 세금이 산출된다. 즉, 실제거래가격이나 감정가, 보상가 등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상속재산에 포함된 토지가액은 공시지가를 토대로 산정된다.

● 양도소득세 자동세액계산 전산서비스 확대

부동산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자동세액계산 전산서비스가 전국 모든 세무서로 확대된다. 이 전산서비스는 민원인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에 입력하면 1분 이내에 납부해야할 양도세액이 자동산출되도록 한 것으로 전화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통신·교통

● 중형 직행좌석버스 운행

서울도심과 변두리를 직행으로 연결하는 17인승 중형좌석버스 2백대가 운행된다. 요금은 1천4백원내외.

● 시내통화시분제 확대시행

3분 통화시마다 25원씩 부과되는 시내통화요금시분제가 성남, 의정부, 안산, 구리, 청주, 포항, 진주, 전주, 제주, 여수, 목포 등 11개지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평택, 구미, 원당, 이리, 군산, 천안 등 6개지역도 91년중 지역별로 8급지(전화시설 10만회선 이상)로 승격되는 시점부터 시분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시분제 실시지역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10개지역에서 총 27개 지역으로 늘어나게 된다.

● 종합유선방송(CATV) 시범방송실시

서울의 목동과 상계동 아파트 단지 1만세대를 대상으로 TV 10개 채널, FM라디오 5개채널, 정보통신서비스 3개채널을 제공하는 종합유선방송 시범방송이 7월1일부터 시행된다.

● 공중전화증설

관리용 공중전화 1천5백대와 카드식 공중전화 7천대 등 모두 2만2천대의 공중전화가 증설되고 관리용 2만4천9백60대, 카드식 7천8백대가 개설된다. ●